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등)
나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계약 제한 등)
다. 금융투자업규정 (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(2020/8/27 제정 · 시행)[1)]

1) 제정 이유

□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2020. 8. 27 시행)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등록요건(제4조, 별표 1, 별표 2)

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, 사업계획, 대주주,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요건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

— 인력에 관한 요건

-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정보처리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

— 물적 설비

-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
- 업무공간과 사무장비
- 보안설비

— 사업계획

-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
-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

—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

---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33조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(제8조)

— 부실채권 매각,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, 금융사고 및 손해배상의 확정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공시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□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관련 준수사항(제10조)

— 연체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가 제한

— 동일 차입자에 대한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로 할 것

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비율을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관련 준수사항을 규정

□ 연계대출 · 연계투자 계약의 제한(제13조)

— 금전의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, 원리금수취권,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높은 자산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 · 연계투자 계약 체결을 제한

— 대부업자, 복수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연계대출 계약 체결을 제한

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연계투자 계약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의 범위 내에서만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

□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등(제29조)

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등의 보관 및 처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예치기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투자금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

□ 손해배상책임(제31조)

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최소 보장금액 또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규정

•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5천만원, 1억원, 3억원으로 구분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□ 연계투자금액의 산정 등(제33조)

— 연계투자금액은 투자자의 연계투자금액에서 연계대출 상환금 중 해당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연계투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

—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한 총 연계투자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정

•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으로 한정

나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(2020/8/27 제정 · 시행)

1) 제정 이유

□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2020. 8. 27 시행) 과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(제3조)

— 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정공시정보는 내용 전부를 페이지 이동 없이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

— 법정공시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할 때마다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

□ 연계대출 · 연계투자 계약의 제한(제5조)

— 규정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

-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)
- 파생상품
- 한국거래소에서 투자경고 종목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한 상장주식
- 연체 채권 등 부실 유가증권
- 사행기구, 투전기, 사행성 유기기구, 카지노 칩스(chips),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· 무형의 결과물
-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, 객관적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것

□ 내부통제기준의 마련(제9조, 제10조)

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신용평가업무,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업무,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 · 보호에 관한 업무,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업무, 민원 및 분쟁의 처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

다. 금융투자업규정 (2020/8/27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자본시장법 제4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향후 조치명령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 및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(제2-14조의2 신설)

—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으로 수단의 보충성, 침해 최소성, 명확성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함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